

포항시 어촌·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오정홍 어촌활력과장)

가. 개정이유

- [어촌뉴딜 300사업], [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]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·관리 방안을 확립하여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하여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해양중심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.
- ‘구룡포해파랑문화쉼터’ 구성에 따라 포항시 어촌·어항재생사업 시설물로 추가하여 원활하게 운영·관리하고자 함.
- ‘어촌·어항재생사업’을 정의하는 상위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정비(안 제2조)
- 어촌·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추가(안 제3조)
- 어촌·어항재생사업 시설이용료 추가(안 제6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룡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구룡포해파랑문화쉼터가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례상 어촌·어항재생사업 시설물로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신규 조성된 시설의 운영 근거와 사용료 체계를 마련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료가 유사 공공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향후 이용 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